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19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민형배・이개호・정동영

소병훈 • 박지원 • 양부남

김문수 · 김현정 · 이성윤

강유정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 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 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페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을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를 "등급의"로, "제공할 경우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해당 게임물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해당 게임물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에게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한다.

1.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 2. 그 밖에 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등급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게임물
- ⑥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 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되기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등급을 재분류 하도록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물을 1년 이내에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아니하고 해당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물의 내용 수정이 등급분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 제11항"으로 한다.

제21조의10제3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9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제4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제8항에 따른 등급재분류를 신청하는 자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4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수정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u>제21조제7항</u> 에 따	②
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	
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생	제21조(등급분류)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⑤
<u>내용을 수정한</u> 경우에는 문화	호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u>ㄴ</u>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	
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	
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	
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	
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	

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 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 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 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 _____

- 1.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 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제공되는게임물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 2. 그 밖에 위원회가 게임물 등 급분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등급이 변경될 우려 가 있다고 판단한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게임물
-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에는 수정한 내용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 시하여야 한다.

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위원 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급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 을 재분류하거나 해당 게임물 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 물배급업자에게 게임물의 내용 을 수정하기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 ⑧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 임물배급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되기 이전의 내용 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등급 을 재분류 하도록 위원회에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을 재분 류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 우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 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 배급업자가 제7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 은 게임물을 1년 이내에 등

<신 설>

⑦・⑧ (생략)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 급분류 결정이 <u>제7항</u>의 등급분 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 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1. <u>제21조제7항</u>에 따른 등급분 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임물의 내용 수정이 등급분류
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u>①</u> · <u>②</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u>③</u>
<u>제11항</u>
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u>.</u>
1. 제21조제11항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u>제21</u> <u>조제7항</u>으로 정하는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 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 외한다.

- 2. ~ 12.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소화) ① · ② (생 략)
 -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 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 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 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 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 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

제21조제11항
<u>.</u>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
사건(중요문규 결사의 신 소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O1 7 -1]11 - 7]
<u>제21조제11항</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 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제41조(수수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u><신 설></u>
- ③ (생 략)법률제20485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생 략)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제9항에 따른 등급
분류 결정의 취소
2.·3.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제8항에 따른 등급재
분류를 신청하는 자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u><신 설></u>

2의3. ~ 2의7. (생략)

3. ~ 8. (생 략) <신 설>

③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이 전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2의4. ~ 2의8. (현행 제2호의3 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게 임물의 수정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